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10 - 75
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인식 개선과 출산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“출산축하금” 이라고 함은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함

### 나. 지급대상자의 범위 (안 제3조)

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함)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고, 부모의 사망,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 보호자로 함을 규정

### 다. 지급기준 (안 제4조)

예산범위에서 출생아별로 10만원을 지급함을 규정

### 라. 지급신청 (안 제5조)

지급신청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함)은 안 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하고 거주지관할동장(이하 “동장”이라 함)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

고서 접수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서식의 지급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함)와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함을 규정

마. 지급절차 (안 제6조)

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함)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규정

### 3. 제정근거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계획

: 가정복지과-32338(2010.10.15)호

### 4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2011년도 예산안 반영

### 6. 기타사항

가. 관계근거

- (1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- (2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
- (3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8조 (혼인과 출산)

나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 : 2010.10.21. ~ 11.1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(2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0.11.16)
- (3)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, 제10조 및 「건강 가정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신생아”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.
2. “출산축하금”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**제3조(지급대상자의 범위)** ①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신청일 현재 구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급대상자가 된다. 이 경우 대상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모의 사망,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,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.

**제4조(지급기준)**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.

**제5조(지급신청)** ①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된다.

② 거주지 관할 동장(이하 “동장”이라 한다)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와

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2. 예금통장 사본 1부
3. 제3조제2항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 등 입증서류

**제6조(지급절차)**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,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
2. 구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
3.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

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출산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환수조치)**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축하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.

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.

**제8조(대장 등 비치)**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를,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접수번호 제 호	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			
	성 명		생년월일	년 월 일
신청인	주 소			
	전화번호	자택 :	HP :	
보호자	부		주민등록번호	-
	모		주민등록번호	-
신생아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계좌번호	은행명 :			
	계좌번호 :	예금주 ( )		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 
출산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예금통장 사본 1부	수수료
	2. 그 밖의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1부	없음

\*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

[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 사항]

\*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.

[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 확인]					
신청인	성 명	신생아와의 관계(√)			
	주민등록번호	-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호자		
주 소					
확인 사항	○ 신생아 성명 :				
	○ 신생아 생년월일 :	년	월	일	
	○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사항 :	년	월	일 ~ 년	월
확인자	(소속)	(직급)	(성명)	서명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출산축하금 지급 대장